

# 예 산 총 칙

2013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451,730,600	13,551,918
일반회계	412,463,797	12,373,914
특별회계	39,266,803	1,178,004
공기업특별회계	23,505,981	705,179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4,982,565	449,477
하수도사업특별회계	8,523,416	255,702
기타특별회계	15,760,822	472,825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2,258,306	67,749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371,900	11,157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966,178	58,985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안정자금관리특별회계	920,827	27,625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784,903	23,547
농공단지사업특별회계	3,080,000	92,400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	2,711,000	81,330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222,057	6,662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316,438	9,493
도시개발특별회계	1,500,000	45,000
주택사업특별회계	430,413	12,912
지하수관리특별회계	198,800	5,964
농어업발전기금특별회계	1,000,000	30,000

제 2 조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과 같다.

제 3 조 2013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0,500,000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2013년도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2013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8,873,858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다음 경비에 부족에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이용할 수 있다.

1.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
2. 일반운영비
3. 여비
4. 자산및물품취득비
5.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